

생산시스템기술연구소 규정

제1조(설치 및 명칭)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선문대학교/통일중공업 공동부설 "생산시스템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본교의 기술인력과 통일중공업의 기술인력을 결합하여 생산시스템에 관련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통일중공업의 제품원가절감 및 품질혁신을 주목적으로 하되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타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연구소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기존 공작기계 분야의 문제점 해결 및 공작기계 신모델 개발
2. 자동화 제조시스템 개발
3. 본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사회주의권의 고급과학기술의 상품화 및 개발
4. 기타 통일중공업의 사업에 합치 또는 인정하는 분야의 연구
5.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지원
6. 기타 중소기업 기술지원

제4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2인을 둔다.
2. 본교의 인력과 통일중공업 측의 기술인력에 의해 공동연구를 한다.
3. 연구소는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4. 연구개발 업무별로 팀을 구성한다.

제5조(소장 및 부소장) ①연구소의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운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부소장은 통일중공업측과 본교 측에서 각 1인을 선출하며 소장의 동의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④통일중공업측에서 선출된 부소장은 소장의 보좌와 통일중공업측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⑤본교측에서 선출된 부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통일중공업의 선도기술사업에 관련하여 본교의 전임교수 및 학생들의 원활한 연구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통일중공업 및 국내 기계공업 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한다.
- ⑥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팀장) ①연구개발 팀의 팀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팀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팀을 감독한다.

제7조(연구원, 객원연구원) ①각 팀은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의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통일중공업 측의 위촉을 받은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객원연구원은 직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전문가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⑤연구원 중 소장의 위촉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통일중공업에서 별도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연구원) ①각 팀은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본교 소속 직원 및 대학원생, 조교와 통일중공업측의 위촉을 받은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원) 연구소는 생산, 서무, 회계,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시 통일중공업측으로부터 직원 파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연구원 및 통일중공업 측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수립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팀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및 평가
4. 연구소의 관련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비, 통일중공업의 연구비, 기타 중소기업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해 충당한다.

②통일중공업에서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별도의 업무세칙에 따라 인수, 집행한다.

제14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소에서 본교의 연구비나 기타 중소기업의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지급 및 관리는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르되, 통일중공업의 연구비는 연구소의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 그 지급 및 관리를 본교 연구관리 부서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6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5.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